

## 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도·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기능) 제2호중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 “(매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함)”을 “(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함)”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제2항제1호중 “식산극장”을 “능어촌개발극장”으로 하고 “건설극장”을 “건설도시극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